

수원시민안전보험 안내

담보명	보장명	보장한도
상해 의료비 (상해 장례비)	수원시민의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의료비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- 피해자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상해의 직접 결과로 장례비용 및 필요 응급비용, 치료, 수술, X선 검사, 치과 치료, 입원 등이 발생한 의료비 (질병, 코로나 등 법정 전염병 등 제외) 담보	상해의료비 1인당 100만원 한도 (단, 장례비의 경우 1인당 2천만원 한도)
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	만 12세 이하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행자로서 운행중인 자동차와 충돌, 접촉 등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"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"에서 정한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	5천원 ~ 50만원 (14급 ~ 1급)

상해의료비 보험금 지급 제한사항

- ① 교통사고
단, 아래의 사고는 보상됩니다.
-스쿨존 혹은 실버존에서 교통사고
-자전거 (공유 대여형 및 비영업용 포함)
-개인형 이동장치(공유/대여형 PM 및 비영업용 PM포함)
※ 개인형 이동장치(PM이란?) : 전동킥보드, 전동이륜평행차,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
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자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.
- ② 산업재해사고 및 기타 유사한 법(공무원 재해보상법 등)으로 보상되는 사고
- ③ 국민건강보험 공단 부담 의료비
- ④ 비급여 항목
- ⑤ 질병, 감염병(코로나 등), 노환
- ⑥ 영조물배상공제에서 담보되는 상해 의료비 및 상해사망 장례비
- ⑦ 15세 미만의 상해사망
- ⑧ 장지 매입/임차 비용 및 납골당 비용
- ⑨ 자살(극단적 선택)
- ⑩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 증권 및 보험 약관에 따름

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지급 제한 사항

- ① 하역 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
- ② 자동차의 설치,수선, 점검, 정비나 청소 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
- ③ 건설 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 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손해

※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치료받은 건에 대해 사고일로부터 3년간 청구 가능합니다.

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

담보구분	구비서류	
공통서류	1. 보험금 청구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2. 주민등록 초본 (전입신고일 기재) - 외국인의 경우 초본 대신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3. 신분증사본 및 통장사본 4. 초진 기록지 또는 의무기록사본 (내원시 사고 상황 기재)	
미성년자	1. 가족관계증명서 2. 친권자 중 한 분의 신분증, 통장사본 - 이혼 등 기타 사유로 친권자가 1명일 경우 :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(친권확인서류) 필수	
사망 장례비	1. 사망진단서/시체검안서(병원발급) 2. 기본증명서(사망사실기재, 망인기준) 3. 상속관계 확인 서류 :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증명서 등(망인기준) 4. 장례비 영수증, 화장시설 비용 영수증 5.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	원본 제출 필수
의료비	1.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(병원발급) - 한국질병분류번호 기재 필요 2. 입퇴원/통원 진료비세부내역서(병원발급) 3.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또는 납입확인서(병원발급) * 카드영수증 불가 4. 스쿨존 & 실버존 교통사고 시 -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	
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	1. 자동차 보험 지급 결의서	

수원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	
전화번호	02-2135-9453
서류 접수	(팩스) 070-4758-8556 (이메일) a18997751@hanmail.net
원본 접수	서울시 서초구 서운로 13, 중앙로얄빌딩 19층, 1902호 수원시민안전보험 담당자 앞 (06732)

유의사항
√ 진단서, 진료확인서는 한국질병분류번호 기재된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.
√ 의료비 청구 시, 육하원칙에 따라 기재 후
√ 상기 구비서류 이외에도 보험금 지급을 위해 보상과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√ 보험금 지급심사를 위해 절차상 사고현장조사 병원 방문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고객의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법인에게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